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명시 등 〉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05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명시 등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9. 24.

다. 회 부 일 : 2025.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대회 육성·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제대회 채택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관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명시 등

가. 개정안 요지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을 추가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6조 및 제9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u>활성화</u> , 국제 협력 및 <u>교류</u> <u><신설></u> 5. ~ 10. (생략) ③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활성화</u> <u>4의2.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u> 5.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 ----- ----- ----- ----- ----- <u>두어</u> <u>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스포츠 관련 국제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사와 협력·교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장관 자문기구로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그러나 국내 이스포츠 종목이 국제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보나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관에 대한 자문기능이 일관적·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자문위원회 설치에 다른 입법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는 점을 개정안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³⁾

2) 다만, 2012년 법 제정 이후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가 실제로 구성·운영된 사례는 없음.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문학진흥법」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이에는 게임분과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분과에는 한국이스포츠협회가 참여하여 필요시 이스포츠 관련 진흥 자문을 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스포츠만을 다루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게임분과내에서 게임정책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자문 기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6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연계·통합 하거나, 부처 소속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제7조, 제7조의2) - 법률안의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문체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임 - 현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는 '12년 법률 제정(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자문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